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1148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너스담당변호사 최성만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열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22.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11250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상회복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9. 3. 4. 위 돈을 2019. 7. 4.부터 2020. 1. 4.까지 매월 3,000만 원(마지막 달은 4,000만 원)씩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D의 동생으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9.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4. 접수 제6064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E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앞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2020.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21. 8.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10. 1.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절차는 그대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던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 재산감소 행위를 하였을 때, 그와 같은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채권의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인바, 채권자가 그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개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고,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까지 채권자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다.

결국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고, 배당절차까지 모두 종결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이상 위 근저당권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 중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별 지]

목 목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1층 26.16㎡

2층 107.28㎡

3층 102.92㎡

4층 102.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 2, 3, 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6.54㎡, 2층 26.82㎡, 3층 25.73㎡, 4층 25.7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답 1747㎡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임야 26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전 151㎡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전 48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임야 22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5.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 3, 4, 5. 2869분의 137.275. 끝.

